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90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최은석 · 안철수 · 김태규
김상훈 · 이소희 · 김선교
신성범 · 김장겸 · 서명옥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설립하려는”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 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 설립(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려는-----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 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립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생 략)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현행 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② -----제4조제3항-- ----- ----- ----- ----- -----

있다.	-----.
제64조(벌칙) ① (생 략)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1. 제4조제3항----- ----- ----- -----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3. -----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